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10. 24(금)

관광건설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0월 4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3년 10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219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2003. 10. 17)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께 연 참)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입장요금을 조정하고,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청남대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입장료 징수에 있어서 국가·독립·참전·광주민중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신 의 수)

-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청남대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입장료 징수에 있어 국가·독립·참전·광주민중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붙임서류 :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 제2항에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로 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7.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8. 평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의 자
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개호인 1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부 등) ①~④(생략) <u>< 신 설 ></u>	제5조(위원장의 직부 등) ①~④(생략) <u>< 신 설 ></u>	제5조(위원장의 직부 등) ①~④(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부 등) ①~④(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부 등) ①~④(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설비비상조례가 전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임장료 정수 등) ①(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장료를 정수하지 아니한다. 1.~4.(생략) <u>< 신 설 ></u> <u>< 신 설 ></u> <u>< 신 설 ></u> <u>< 신 설 ></u> <u>< 신 설 ></u>	제7조(임장료 정수 등) ①(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장료를 정수하지 아니한다. 1.~4.(생략) <u>< 신 설 ></u> <u>< 신 설 ></u> <u>< 신 설 ></u> <u>< 신 설 ></u>	제7조(임장료 정수 등) ①(현행과 같음) ② 1.~4.(현행과 같음)	제7조(임장료 정수 등) ①(현행과 같음) ② 1.~4.(현행과 같음)	제7조(임장료 정수 등) ①(현행과 같음) ② 1.~4.(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위관련법률시행령 제96조 제1항 각호의 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 하는 자 7.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8.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의 자 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개호인 1인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장료를 할인하여 단체임장료를 정수한다. 1.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위관련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 보조자 1인 ④(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장료를 할인하여 단체임장료를 정수한다. 1.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위관련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 보조자 1인 ④(생략)	③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는 <u>< 삭 제 ></u> <u>< 삭 제 ></u> <u>< 삭 제 ></u> <u>< 삭 제 ></u>	③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는 <u>< 삭 제 ></u> <u>< 삭 제 ></u> <u>< 삭 제 ></u> <u>< 삭 제 ></u>	③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는 <u>< 삭 제 ></u> <u>< 삭 제 ></u> <u>< 삭 제 ></u> <u>< 삭 제 ></u>
				④(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고궁등의 이용보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고궁등의 이용보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9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법률

제23조(고궁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고궁등의 이용)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궁등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참전유공자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②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광주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광주민주유공자의 유족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광주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중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민주유공자중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축진을 위하여 세계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3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 면 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무궁화호·통일호 및 비둘기호에 한한다)	100분의 50
2. 도시철도(철도법에 의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철도청이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에 한한다)	100분의 50
6. 고궁	100분의 100
7. 능원	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비 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객운임에 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호인 1인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8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공공 시설 등을 이용하는 때에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할 장애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0년 3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 * 보호자에 대하여도 공공시설 등 이용요금을 감면하여야 할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된 장애인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2 :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

1. 철도(무궁화호·통일호 및 비둘기호에 한함) : 50%
2. 도시철도(철도청이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 100%
3. 공영버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에 한함) : 100%
4. 국·공립 공연장 : 50%
5. 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에 한함) : 50%
6. 고궁·능원·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 100%